

엔지니어링사업처 2025년 제2차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

우리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간제 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5년 2월 6일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

1. 채용내용

- 고용형태 : 기간제 계약직
- 채용인원 : 1명
- 근무시간

채용(공모)분야	채용인원	근로조건	근무지
설계감리기술인 기계분야	1명	1일 8시간, 주 40시간	서울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8층

- 주)근무 기간 중 기관 사정에 따른 탄력근무제 도입으로 소정근로시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
또한 근로시간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"사용자"와 "근로자" 상호협의를 의해 변동가능
- ※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시에는 대체 휴가 시행
 - ※ 퇴직급여 : [계약기간 1년 미만] 미지급, [계약기간 1년 이상] 공사 규정에 따라 지급
 - ※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 개선에 따라 보수금액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.
(24.2.15에 개정된 자사 규정에 따름)
 - ※ 기간제법 제4조(기간제근로자의사용)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님
 - ※ 숙소 미제공

채용분야별 세부 직무내용

채용(공모)분야	담당직무
설계감리기술인 기계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LNG 터미널(하역설비 포함) 건설공사 설계감리업무 및 저장탱크 설계성과물에 대한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업무- EPC사가 작성하는 기계분야 모든 설계 성과물 설계감리 업무- 저장탱크 설계사가 작성한 기계분야 설계 성과물 검토

□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(공모)분야	사업기간	채용구분 ^{주1)}	채용인원	근로계약기간
동북아 LNG Hub 터미널 1-1단계 건설사업 발주자 설계감리 및 기술지원 용역	'24.11.14 ~ '27.12.31	기계분야 설계감리기술인	1명	'25.03.24~ '26.03.23
합계			1명	

※ 기간제법 제4조(기간제근로자의사용)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님

주1)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기간연장 발생 시 인사평정점수가 우등급 이상인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 가능

- 근로계약기간은 총 2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원칙. 단, 사업기간이 2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 가능

□ 필수사항

채용(공모)분야	필수사항
기계분야 설계기술감리인	·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지원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등급

□ 응시자격 및 우대/가점사항

○ 엔지니어링사업처 기계분야 설계감리기술인

구 분	자 격 기 준
응시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령, 성별, 학력, 전공 등 제한 없음(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) ※ 병역법 제76조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· '25.03.24(월)부터 근무 가능자 (공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) ·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 결격사유 없는 자 ·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지원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등급
우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석유화학 플랜트(LNG 생산기지, LNG 저장탱크, 고압 천연가스 공급설비 포함) 기계분야 설계 또는 설계감리 유경험자 - 1개월 × 0.25점 (최대 70점) ※ 경력계산방법 : 개월 수는 총 (근무일수/30)으로 계산하며, 30일 미만의 경력일수는 절사 ※ 정규직, 인턴, 파견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 ·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지원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등급 (최대 20점) - 특급기술자(20점), 고급기술자(10점) · 국가기술 자격 산업기사 이상 보유자(최대 10점) - 기술사(10점), 기사 또는 기능장(7점), 산업기사(5점) ※ 인정 국가기술 자격 범위 :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의 기계 분야

○ 공통(경력인정기준)

1. (업체발급경력 증명서 경우)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(경력)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분야 및 근무기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, 발급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(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)
 - 공인기관 미등록 기술자 : 아래 '가' 또는 '나' 서류와 함께 "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, 국민연금가입증명, 고용보험증명 중 택1"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
 2. 공인기관 등록 기술자
 - * 기술자 등급은 공인기관의 경력증명서를 기준, 해당업무 경력기간으로 산정
 - * 공인기관 : 한국건설기술인협회,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, 한국엔지니어링협회, 한국전기기술인협회, 한국전기공사협회, 한국기술사회, 한국소방기술인협회 등 공인기술자 경력관리기관
 3. 공인기관 미등록 기술자 : 아래 '가' 또는 '나' 서류와 함께 "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, 국민연금가입증명, 고용보험증명 중 택1"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
 - 가. 공사 양식: 경력증명서 양식 기준, 해당업무 경력기간으로 산정
 - 나. 발급기관 서식: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(경력)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분야와 근무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, 발급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
- ※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효처리함

○ 공통(가점사항)

구 분	공 통 사 항
가점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우대(전형단계별 만점의 5% 또는 10%) * 단,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 (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. 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장애인등록자 (전형단계별 만점의 10%) •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등록자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 * 단, 서류전형 원점수로 4할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록자 가점 미부여 * 단,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(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)

□ 급여수준(세전)

<엔지니어링사업처 설계감리기술인>

구분	급여기준	채용예정일	채용기간
기계분야 설계감리기술인	· 월 5,226,900원	'25.03.24(월)	'25.03.24~'26.03.23

- *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시에는 대체 휴가 시행
- * 퇴직급여 : [계약기간 1년 미만] 미지급, [계약기간 1년 이상] 공사 규정에 따라 지급
- *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 개선에 따라 보수금액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.
(‘24.2.15에 개정된 자사 규정에 따름)

2. 전형절차 및 일정

□ 전형절차

- 1차전형(서류) :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, 자격 및 우대요건 평가
 -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
 - 1명 채용시 5배수, 2명 채용시 3배수, 3명이상 채용 시 2배수
- 2차전형(면접) : 직무수행능력, 관련분야 경험 등 질의 응답 (인성 및 역량평가)
- 최종합격자 결정 : 면접점수 가점포함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, 면접전형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(서류30%, 면접 70%)

- 동점자 처리기준 -

순위	처리기준
1	취업지원대상자(국가보훈) 가점 고득점자
2	장애인 등록자
3	면접전형 중 직업기초능력 점수 고득점자
4	가점을 포함한 서류전형 고득점자

□ 전형별 추진일정

구 분	추진일정	주요내용
채용공고 및 원서접수	`25. 2. 6(목) ~ `25. 2. 21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접수방법 : 입사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• 접수처 : https://kogastech.recruiter.co.kr • 접수마감 : `25.2.21(금) 15시 * 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`25. 2. 27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류합격자 개별통보 및 입사지원 홈페이지 공고
면접전형	`25. 3. 4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소 :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사무소 -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 새싹타워 6층 * 면접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
최종합격자 발표	`25. 3. 21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입사지원 홈페이지 공고
임용	`25. 3. 24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임용일 변동가능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3. 서류제출

구 비 서 류	제 출 시 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) 	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초본(군경력 기재) 및 주민등록등본 원본 각 1부(생년월일만 표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고일 이후 일자로 발급하여 제출 -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반드시 군경력을 포함하여 발급 	면접일 제출 ^{주2)}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해당자) 직장날인이 반영된 경력증명서(담당업무 기재)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격증 사본(해당자), 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증명서(해당자)^{주1)} 1부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해당자) 취업지원(보훈)대상자 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해당자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	

주1)직인이 없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

주2)면접당일 관련서류 미제출 시, 면접응시 불가

4. 유의사항

-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, 증빙서류 위·변조, 기재 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채용분야 간 **중복지원은 불가하며,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함**, 또한 전형과정에서 응시자가 채용기준에 미달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에 응시를 제한함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입사지원서와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결격사유(인사규정 제5조) 발생 시 불합격 처리, 채용 후 발견 시 채용취소 또는 해고 조치함
- 최종합격자 결정 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확인서 징구
-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에 관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름
 - (보관기간)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 반환(※단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별도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.)
- 채용담당 부서의 장은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고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.
- 최종합격자 결정 시 예비순위 부여(채용계획인원의 4배수)하여 임용 전 입사포기, 임용 후 1개월이내 퇴사자 발생, 결격사유 등 발생 시 차순위 총원
- 전형별 채용비리 확인시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형별로 채용계획인원의 4배수 예비합격자 운영

5. 불합격자의 이의신청

- 신청방법 : 한국가스기술공사 엔지니어링기획팀 채용담당자로 문의
- 기간제 계약직 지원 : choimr@kogas-tech.or.kr / 02-2657-1223
- 신청기한 :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~ 익일까지(최종합격자는 15일간)
- 이의신청 처리대상 : 채용 관련 부정행위 및 불합격자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
-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: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평가자 개인정보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등

6. 결격사유

- 인사규정 제5조(결격사유)
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4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7.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,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 9.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 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 11.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 1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1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2025. 2. 6.
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